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 수행의 방법, 전자적 수사자료 및 소송자료의 작성·유통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한 핵심 개념인 형사사법포털, 전자기록, 전자기록사건, 정보통신망 등을 규정함.

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안 제3조)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다. 사용자등록(안 제4조)

개인회원, 법인회원, 변호사회원은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라. 사용자등록의 철회(안 제5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효과는 이미 제출하거나 송달·통지받은 전자문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마. 사용자등록의 말소(안 제6조)

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의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자등록을 정지 또는 말소할 수 있음.

바. 전자서명(안 제7조)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려는 사건관계인은 그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를 작성하려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함.

다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사건관계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실지

명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서명(전자패드를 이용한 손서명 등)을 할 수 있음.

사.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안 제8조)

사건관계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각각의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별도의 파일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아.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안 제9조)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등록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 전자문서의 제출 등(안 제10조)

사건관계인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전자화대상문서 원본을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함.

차.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안 제11조)

등록사용자가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

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등에 관해 밝히도록 함.

카. 전자문서의 확인(안 제12조)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보관 중인 해당 전자문서와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등록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전자문서를 열람시켜 줄 의무가 있음.

타.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안 제13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가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파. 수사 관련 자료의 요청(안 제14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하.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안 제15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의무가

있지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하고, 위와 같은 장애 사유가 해소될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사후 전자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안 제16조)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영상녹화, 진술거부권 고지, 수사과정의 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함.

너. 전자화문서(안 제17조)

현황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 자체로 보관할 필요가 있거나, 대형 도면 등 기술적으로 전자문서 변환이 어려운 경우 원본 문서 자체로 접수하도록 함.

또한 전자문서화 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건 등을 전자화 예외 사유로 규정함.

더.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안 제18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종이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 간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러.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안 제19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등을 전자화한 후 제출자에게 원본 문서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제출자는 해당 형사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함.

며. 전자문서의 정정 등(안 제20조)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전자문서의 효력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하고,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함.

위와 같이 전자문서를 폐기하거나 정정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폐기 또는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폐기 또는 정정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버. 전자문서의 유통 등(안 제21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작성·유통하는 문서는 그 내용의 추출·검색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는 전산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때로 간주함.

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안 제2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조서, 신원관리카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서명과 무인 역시 가명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음.

어.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안 제23조)

등록사용자가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저. 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안 제24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의 송달·통지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하고,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가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거나 유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송달·통지는 해당 구금시설의 장 등에게 하도록 규정함.

처. 기간의 계산(안 제25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전자적 송달·통지의 기간에 삽입하지 않도록 함.

커. 출력서면의 송달 등(안 제2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송달받을 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력서면의 송달을 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

이 유지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함.

터. 전자기록의 열람 등(안 제27조)

사건관계인은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건관계인의 경우 전자문서 등의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퍼.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안 제28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간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전자화대상문서는 사건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보관하도록 함.

허. 영장등의 사본 교부(안 제29조)

피의자에 대한 전자영장 집행 후 피의자에게 영장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 문자전송서비스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음.

고. 영장등의 반환(안 제30조)

전자영장이 발부된 후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법원에 전자영장을 반환하고 그 사유를 별도의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노. 압수목록 등의 교부(안 제31조)

전자영장 집행 후 압수목록 등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 문자전송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음.

도. 공판절차에서 전자문서 제출 등(안 제32조)

형사재판 계속 중 검사는 전자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안 제33조)

검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증거기록의 제출 등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모.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안 제34조)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되,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음.

보.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안 제35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기록의 훼손, 유출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안 제36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오. 전자문서의 폐기·보관(안 제37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기록을 폐기하려는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중대재해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전자기록은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포털”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으로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3. “전자기록사건”이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

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이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3.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4.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5. 피해자, 고소인의 대리인(피해자, 고소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 또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검사가 선정한 국선변호사를 포함한다)
6. 피고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7. 피해자의 보조인(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8.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변호인이 되려는 자
9. 진술조력인(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등에서의 조력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11.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4항,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통역인, 번역인, 감정인

13. 법원 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

14.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

16. 참고인

17. 피내사자, 피혐의자

18. 진정인, 피진정인

19.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20. 법 제17조에 따라 영장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피압수자

2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22.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등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집행을 지원하거나 관계되는 사람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소정의 ‘보호소년등’

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 및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소관 업무 수행과 관계있는 사람

24. 소년보호사건의 소년, 법정대리인 및 그 보조인

25. 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자

제2장 사용자등록

제4조(사용자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의 등록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등록사용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제3조 각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더라도 철회 이전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문서의 효력 및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통지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제4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의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말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 또는 열람한 마지막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제7조(전자서명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이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된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 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같이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문서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전자문서를 제출받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공고는 형사사법포털에 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및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장, 증거, 그 밖의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등록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

으로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제7조제1항에 따라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등록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의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전자화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제시나 제출을 요구받은 등록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등록사용자가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록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전자문서의 확인)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등록사용자로부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등록사용자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문서 내용의 동일성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자가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접수한 후에는 접수된 전자문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④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청)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전송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2항의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그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전자문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영장을 집행할 때 급속을 요하거나 집행시한이 임박한 경우, 그 밖에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현장에서 관계 서류를 긴급히 작성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등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을 송치 또는 송부받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5.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전자문서화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법원을 포함한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제1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서 내용의 증감·변경 및 이의제기 내용에 대하여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전자서명(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종이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서를 출력하여 종이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절차는 영상녹화 완료 후 그 영상의 해시값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통하여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전자화문서)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황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 자체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서적, 대형 도면 등 제출된 종이문서의 크기, 선명도 등에 비추어 전자문서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 일부 중요한 내용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3. 기술적으로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전자문서화 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18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행정
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문서의 접수 일시, 전자
화문서의 생성 일시 및 전자화대상 문서와 전자화문서 간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전자화문서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①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
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화대
상문서를 반환하기 위하여 동일성을 확인 하는 경우 제12조를 준용한
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대
상문서를 반환받은 제출인은 전자화대상문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
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문서의 정정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잘못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
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 폐
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 정정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폐기하거나 정정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폐기 또는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전자문서를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전자문서의 유통 등) ① 법원을 포함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자문서는 송부받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출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와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 ①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조서나 신원관리카드,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과 무인 대신 가명으로 전자서명(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한 전자서명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제23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2. 「형사소송법」 제60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3.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통지하는 경우 종이문서를 송달·통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4조(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등재 및 그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를 송달·통지 받을 법원을 포함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 법 제14조제1항제3호 :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에 입력한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다만, 문자전송 서비스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체포·구속 등 구금되어 있거나 유치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송달·통지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그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송달·통지는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송달·통지를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효력이 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송달·통지의 경우, 법원을 포함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송달·통지의 대상인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제2호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 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사용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등록사용자가 중대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

⑥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기간의 계산) 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정상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송달받을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출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와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장 전자적 열람과 송부

제27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전자기록을 열람·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의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수사서류 등을 열람·복사하는 경

우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라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교부받는 경우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등록사용자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정보저장매체 등에 복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체포·구속 등 구금되어 있거나 유치되어 있는 경우 전자기록의 복사 또는 서면의 교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열람은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열람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서면은 열람을 마친 후 회수한다.

1.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서류 등을

열람하는 경우

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자문서를 열람·복사·출력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전자문서가 열람·복사 또는 출력될 수 있도록 해시값을 비교하거나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를 마친 전자문서를 열람·복사 또는 출력에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① 법원을 포함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간의 사건기록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전송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는 사건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의 송부시점, 방법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제29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제시·전송하여 집행하는 경우, 사본임을 표시한 해당 영장등의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출력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장등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영장등의 반환) ① 유효기간 내에 영장등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

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등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반환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영장등과 별개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압수목록 등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8조 및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압수목록,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제7장 공판

제32조(공판절차에서 전자문서 제출 등) ① 검사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자문서, 전자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기술적으로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3.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또는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예방이 필요하여 검사가 재판장등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출력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 ① 검사는 공판정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검찰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기록 열람, 공판카드 작성, 신원관리카드 열람, 증거 신청 및 증거 제출 등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공판정에서 위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신청서, 증거 목록, 증인신문청구서 및 공소장변경신청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방식) ①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등을 출력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와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전자문서의 이용·관리)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작·변작·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현장검증, 채택근무, 현장수사, 현장 지도·감독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청사 이외의 곳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홈페이지 및 형사사법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전자문서의 폐기·보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생산부서 의견조회,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

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 중대재해사건, 흉악범죄, 부패범죄 등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2.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3. 상소권회복청구, 재심청구가 예상되는 사건
4. 교정기관의 구금(수용), 교정, 형집행과 관련되어 작성된 전자문서
5. 보안처분이 집행되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부과된 사건
6.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제4호에 따른 관련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9.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심 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가 있는 사건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여 특별히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건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 10.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절차는 2025. 6. 9.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은 제1항에 따른 적용일 이후에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합 사건의 특례) 수사과정에서 사건이 병합된 경우 병합 사건 중 일부가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병합 이후부터는 그 전부를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본다.

제4조(일부 조항의 적용 유예에 관한 특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송치·송부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송치하는 사건의 수사기록, 증거기록에 관하여는 2026. 9. 27.까지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체포·구속 등 구금되어 있거나 유치된 자에 대한 송달·통지는 법 제14조, 영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6. 9. 27.까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712